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2062
----------	------

발의연월일: 2020년 11 월 25 일

발 의 자: 김재형, 권수정, 김호평, 송정빈,
여 명, 오현정, 이동현, 이병도,
임만균, 정진술, 최 선, 추승우,
한기영 의원(13명)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문제가 청년 당사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차원의 청년문제 해결방안이 아닌 서울시에 맞는 청년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 함.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 속에서 우리는 서울시 시의원이자 한 시민으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
- 이에 우리는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 또한, 우리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등의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에서 맡은바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 서울시의 10% 넘는 청년실업률, 40%에 이르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빈곤율, 신용악화의 원인인 학자금 부담, 실효성이 없는 청년 복지정책 등의 청년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이에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는 등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